

(사)한국연극협회 지회, 지부설치운영규정

2005. 01. 08 개정
2006. 07. 29 개정
2007. 09. 29 일부개정
2009. 05. 29 일부개정
2012. 02. 25 일부개정
2013. 03. 30 일부개정
2013. 06. 01 일부개정
2014. 09. 27 일부개정
2018. 0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한국연극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2조에 의거 지회 및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지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해당지역에, 지부는 해당지역 시, 군, 구시, 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 3. 30. 개정]

제3조(설치)

- ① 지회는 해당지역에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연극활동을 한 회원 30인 이상을 확보한 지역에 설치하되 도지회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부장회의에서 설치하고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13. 3. 30. 개정]
- ② 지부는 해당지역에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연극활동을 한 회원 15인 이상을 확보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본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지역 연극예술 진흥 발전을 위하여 지부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준 시부터 2년 이내 15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15인 미만인 지부는 2015년 12월말까지 정회원을 확보하여야한다] [2014. 9. 27. 개정]
- ③ 지회장, 지부장, 이사장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단, 지회 산하지부가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해당지부장이 지회장을 겸한다.
- ④ 지회 및 지부의 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본 협회이사회의 결의로 사고 처리할 수 있다. 사고처리종류는 협회이사회에서 정한다. [2009. 5. 29 개정]

- ⑤ 지회 및 지부의 약칭은 해당지역명 다음에 연극협회로 칭할 수 있다.
[2013. 6. 1. 조항신설]

제4조(구성)

- ① 지회 및 지부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연극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에서 과거 2년 이상 활동해온 자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 규정'에 준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해당지역 연극 활동 중, 학생극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구지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속 지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지회 해당지역에서 과거 2년 이상 활동해온 자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 규정'에 준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2013. 3. 30. 개정]

제5조(의무)

- ①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는 산하 각 지부의 운영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② 지회는 차기년도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사업보고서를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본 협회에 제출(지부가 설치된 지회의 경우, 산하지부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 보고서도 취합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014. 9. 27. 개정]
- ③ 지회는 회원(개인, 단체)의 입회 및 탈회 등 변동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는 매년 12월 31일자 현재시점의 소속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비 (개인, 단체 입회비 포함)는 지회에 납입하며 각 지회는 회비 100% 중 20%는 본부협회에 납입하고 40%는 지회 운영비로 나머지 40%는 지부 운영비로 사용한다. 입회비 및 월 회비는 매년 마지막 본 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2018.1.15. 개정]
- ⑤ 지회 및 지부는 의무적으로 '월간 한국연극'을 구독한다. [2014. 9. 27. 본 항 신설]

제6조(임원선출)

-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지회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3인 이내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 ② 지회는 지부장을 적정 비율에 맞게 이사로, 지부가 없는 광역시지회는 회원극단대표 가운데 비율에 맞게 이사로 선출한다.
- ③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2인 이내
 3. 이사 5인 이내
 4. 감사 2인
- ④ 지부는 회원극단대표를 당연직이사로 우선 선출한다.
- ⑤ 지회 및 지부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회, 지부는 선출된 임원명단을 본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 ① 지회 및 지부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지회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인의 직원을, 지부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지회장이 지회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지부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직무수행 및 임원의 탄핵 등은 본 협회정관에 준하여 정한다.

제9조(신규지부설치) 신규로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지회이사회에 심의를 거친 후 본 협회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공문) 1부
2. 추천서(해당 예총지회 및 지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연간예산서 1부
5. 지부인감대장 1부
6. 임원명부 1부
7. 회원명부 1부
8. 지부정관 1부
9. 지부결성 총회회의록 1부
10. 회원의 이력서 각 1부(사진 첨부)
11. 임원의 경력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2. 해당지역 연극 활동 연혁 1부
13. 임원의 취임 승낙서 각 1부

제10조(정관변경 및 규정인준) 지회, 지부의 정관변경은 지회, 지부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 규정은 지회, 지부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 협회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해외지부) 해외지부는 특별지부로서 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해외지부운영은 해당지부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본 협회는 해외지부운영으로 야기되는 법적,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07. 9. 29 개정]

제12조(지회 지부 자격유지) 제3조 규정과 같이 본 협회 지회 및 지부 설치 운영 규정에 명시된 보유 회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회 및 지부는 그 자격을 정지 시키며 자격정지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자격정지 상태의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격정지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준을 취소한다. [2014. 9. 27. 본조 신설]

제13조(지회 지부 징계)

① 지회지부의장 및 임직원들이 아래 각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제세공과금등의 미납으로 협회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기타 정관 및 제 규정의 미준수와 협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또는 시정 명령
2. 최소 3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기한부 자격정지
3. 해임 또는 인준 취소 [2014. 9. 27. 본조 신설]

부 칙 (2005. 1. 8)

1.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9)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9)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5)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30)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7)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1. 15)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